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문서번호 안양고용센터 -

시행일 2015. 12. 29.

수신 ㈜네오텔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able>
<tr><td colspan="2">1. 예정된 처분의 제목</td><td colspan="7">○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 반환 명령
○ 지원・융자 제한</td></tr>
<tr><td rowspan="2">2.당사자</td><td>명칭 (성명)</td><td colspan="7">㈜네오텔(대표 이재홍)</td></tr>
<tr><td>주 소</td><td colspan="7">경기도 광명시 소하1동 1345 광명테크노파크 E동 1004호</td></tr>
<tr><td colspan="2">3. 처분의 원인된 사실</td><td colspan="7">우편원격 사업주위탁훈련비용 1,584,000원 부정수급
- ㈜한국능률향상교육개발원에 우편원격훈련과정을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지원금을 수령하였으나, 안산고용노동지청 조사결과 과제제출 및 평가 응시 등을 수행하지 않고 훈련기관이 LMS를 조작하여 허위 수료처리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귀 사업장은 미수료자에 대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았음
※ 별첨: 부정수급 내역</td></tr>
<tr><td colspan="2">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td><td colspan="7">○ 부정수급액 528,000원 및 추가징수액 528,000원 반환 명령*
(*부정수급일로부터 3년내 지급액에 한해 반환명령)
○ 처분일로부터 330일 지원・융자 제한**
(**부정수급일로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제한)</td></tr>
<tr><td colspan="2">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td><td colspan="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2조의2</td></tr>
<tr><td colspan="2" rowspan="4">6. 의견제출</td><td rowspan="3">제출처</td><td>기관명</td><td>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td><td>부서명</td><td>안양고용센터</td><td>담당자</td><td>최수영</td></tr>
<tr><td>주 소</td><td colspan="2">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 4층</td><td>전화 (fax)</td><td colspan="2">031-463-0714 (0505-130-0123)</td></tr>
<tr><td>전자우편주소</td><td colspan="5">csj7854@korea.kr</td></tr>
<tr><td>제출기한</td><td colspan="6">2016년 1월 5일까지</td></tr>
</table>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 ·정보통신망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